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510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510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5 선고 2011나1020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가합4388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5. 선고 2011나102020 판결

판결선고 2013. 3.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 받아 손실자와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일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식적, 법률적으로 일응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손실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이나 정의의 관념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피고들이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용인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사실, ② 그런데 피고들이 증여세 연부연납 제2차 납부분을 체납하여 원고가 용인세무서장에게 피고들의 증여세 체납액 합계 1,758,302,99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위 납세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D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정기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하여 936,099,506원을 위 증여세 체납액 지급에 의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변제충당한 사실, ④ 그러나 그 후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을 통하여 또는 직권으로 취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보증보험사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납세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납세담보의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서, 이후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납부세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으로서 환급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다61661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사업자인 원고가 출연한 위 증여세 체납액 1,758,302,990원에 의해 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은 국가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피고들이 얻은 이러한 이익은 원고의 위와 같은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것이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일응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출연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손실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국세환급금 채권을 가지는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으로서 위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이나 그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한다.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에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국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고, 이는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위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피고들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상금채무에 대한 D의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책임도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 이상, 원고는 위 질권 행사에 의해 변제충당한 금액을 D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에서 위 변제충당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또한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위 질권 행사에 의해 변제된 금액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